

수지초등학교 입학 전학 재취학 편입학 처리 규정

제정 2026.03.24.

제1조(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의 의무취학 대상자 중 본교의 읍·면·동의 장이 통보한 명부상의 학생을 취학대상으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입학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타교에서 학년 초 30일 이내에 전입한 자는 입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③ 재취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④ 본교 통학구역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본교에 입학할 신청할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입학할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입학일에 미취학한 학생은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관리대응매뉴얼에 준하여 대응한다.

제2조(만5세 아동의 취학)

- ① 학교장은 교육장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장이 통보한 만5세 조기입학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한다.
- ② 거주지 내 읍·면·동의 장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입학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하여 조기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3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 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할 수 있다.

제4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의무 취학 대상 아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제①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과 같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6조(유예자의 학적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 진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7조(전학 절차)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은 ‘수지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관리자나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다.

제10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이하 이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학교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구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에 의거한 “예방접종 증명서”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귀국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11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및 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외국인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 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재취학)

- ①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 ② 정원외 관리자 및 유예자의 재취학은 정원외 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학년에 취학 및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단,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후 정규학교에 재학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학교서 재취학하는 경우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③ 학업중단자(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 또는 귀국학생 등이 제2항의 교과목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특정학년에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당시 해당학년 수업일자까지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재취학 이후 수업일수만을 기준으로 해당학년의 수료를 결정한다.(단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의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음)
-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인정 유학으로 정원외 관리 중인 자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면 재취학을 할 수 없으며, 재취학을 원할 경우에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할 수 없고 출석일 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